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최민희 · 황명선
조승래 · 박정현 · 윤준병
김선민 · 권향엽 · 박지원
김남근 · 김 윤 · 윤건영
장철민 · 양부남 · 허성무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.

그런데,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

제44조의6제1항 중 “제공자”를 “제공자(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“국내대리인”이라 한다)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	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
3. (생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)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	제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